

필요광장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

다시 세월호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라는 방송에 충실히 따르다 자신이 벌어지는 일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선장은 뭐하고 있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잖아”를 끝으로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 분노, 이 부끄러움과 참혹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용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호의 선장인 국가경영자와 고위관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료, 재계 고위층, 그리고 많은 정치인과 주요 언론매체들은 ‘한국호’라는 배는 복원이 불가능하게 기울고 침몰하고 있는 데도 우리 국민에게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강의 기슭에는 좋은 경치가 많아 배는 흥겹게 하류로 내려갑니다. 저 강 밑 하류에는 낭떠러지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배의 엔진의 힘을 믿고 하류로 갈수록 신나는 경관에 났을 놓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점을 지나면 이 배가 지닌 엔진이 모두 가동 되어도 하류로 흐르는 유속을 감당치 못해 “어어” 하면서 폭포로 끌려 들 수 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임계점에 진입했다는 것을 세월호에 탑승한 17살 꽃다운 생명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말하기에도 송구스럽지만 세가지가 우선 떠오릅니다. 첫째는 자본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의 실패, 둘째는 자신들의 고된 노예 노예 노예 내구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지만 않았더라도 일본에서 퇴출 직전의 18년 된 낡은 배가 도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료체계의 끊임없는 ‘먹이

사슬’의 결과입니다. 관료들이 퇴직하자마자 배의 안전을 심사하고 인정하는 감독기구에 취임하는 이런 먹이사슬이 영속화 되지만 않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의 엄청난 과적, 펼쳐지지 않은 구명정의 상태로는 출항은 금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먹이사슬은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부처와 영역에 유전인자처럼 붙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없이는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세번째가 더 크고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료시스템, 정부 운영시스템을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경력을 우대해 왔던 우리의 지체 부족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력으로 일관했습니다. 향후 이 사고를 일대만 관료조직은 다시 더 많은 자리와 권력을 갖게 되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관료마피아들이 장악한 죽음의 행정시스템을 생명의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고 이를 시민권력의 지배하에 두는 노력에 매진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지역에 다시 사고 당시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동경전력시장의 별명은 원자점잖기의 ‘귀제’로 통했습니다. 그는 비상발전기를 원자로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 침수되게 만들었고, 비상발전자동차는 전기코드가 짧아 연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정의 귀재나 경영의 달인으로 부르는 이 체제가 이미 죽음의 체제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체제에서 생명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그 국가기관에 다시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맡기는 한 관료집단의 자동 승진과 굳어진 먹이사슬은 결국에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집단의 부패와 퇴직 이후 먹이사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 규명을 국민이 직접 감독하는 제3의 조직에 부여해야 합니다. 재난방지 국민민회에서 크고 작은 일시적 상시적 국가 재난에 관련된 의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월호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앗긴 17살 우리 아이들이 주는 처절한 권언입니다.

법조칼럼



이 탄 희 광주지방법원 판사

올해 초 어느 법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되었던 존경받는 변호사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판사가 무슨 고민을 했는지 도대체 전달이 되지 않는다’, ‘전달이 되지 않으니 판사를 이해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필과 같은 판결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 이야기는 ‘국민에게 쉽게 다가오는 판결’의 예로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몇 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법원의 판결문들에는 정말로 우리와 다른 무슨 특색이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미국 판사들은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통찰과 고민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결문에 표현해 온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판결문을 핵심 위주로

판결과 문학

짧게 쓰려 노력하고, 때로는 국민이 친숙한 문학작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문학작품을 인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중적 친숙함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고된 노예 노예 노예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예를 들어 벌써 21년 전인 1993년을 기준으로 미국 법원의 판결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만 800건이 넘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만 보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어, 후회만큼 이 되도록’이라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문을 인용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명예란 영혼에 버금가는 보배 (중략) 저한테서 명예를 뺏으면 뺏은 놈은 그것을 쓰지도 못하면서 나만 빈털터리가 되지요’라는 ‘오델로’의 원문을 인용하고, 내심의 의사만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생각이란 실체가 없는 것, 허다다 그 만듦 건 한갓 생각이 불과하지요’라는 ‘눈에는 눈’의 원문을 인용하는 식입니다. 이런 판결문에 처음엔 가우뚱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문학인들의 평론과 법조인들의 분석이 세실과 날실이 되어 점점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문의 맥락과 판사의 고민을 음미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적

위안을 받은 미국인들은 워싱턴의 케네디센터, LA의 헐리우드 등에서 자발적인 모의재판을 개최하고, 현지 연방대법관을 재판장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모의재판은 나중에 연례행사로 발전되고, 벨 깡신, 조디 포스터, 헬렌 헌트 등과 같은 유명인사들도 배심원과 방청객으로 참여하며, 청소년들은 이런 경험을 거쳐 법조인의 꿈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실 판결문에 문학작품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당해 사건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배경과 본질을 깊이 분석해야 하고, 그렇게 다다른 문제의 본질 속에서 인간의 보편성을 발견해야 하며, 그 보편성을 잘 담아낸 문학작품을 골라내야 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어야 가능할 일이고, 그와 동시에 매우 많은 시간과 사색을 요하는 일이지요. 개인적으로 친부가 자녀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자녀에 대하여’를 인용하려 한 적이 한차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유사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동료 판사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사건, 가솔물 빚어진 소년사건, 피해자를 위로해야 할 형사사건 등에서 한두차례 열심히 시도해보다가는, 이내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판사에게는 왜 이러한 시도

가 쉽지 않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건 수에 있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본안판단을 한 사건 수가 79건입니다. 비교를 위해 편의적으로 9명의 재판관으로 나누자면 1명당 1달에 1건이 채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같은 기간 동안 본안판단을 한 민사사건의 수만 5786건입니다. 1명당 1달에 37건이 넘습니다. 형사사건의 수를 합하면 훨씬 많지요. 하급심 판사의 사건 수 차이는 더 큼니다. 광주지방법원만 하더라도 2013년 한 해 동안 1심 형사단독판사 1명이 1달에 평균 100건 이상을 처리했으니까요. 재판진행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하면, 주어진 날에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에 판사의 통찰과 고민을 담고자 사색하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그다지고 이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자 탐색하는 호기를 부리다가, 사건의 적체를 벗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차례에 대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몰아넣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꿈꿉니다. 사건에 대한 저의 통찰과 고민을 판결문에 한꺼번에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그날을. 대한민국 국민이 판사의 고민을 함께 음미하며 지적 위안을 받게 되는 그날을.

社說

지방선거 막바지 혼탁, 투표로 심판하자

6·4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돌입하면 서 전국적으로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창현 후보와 무소속 강은태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전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도 22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 후보에 우세 내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와 단일화 등을 통해 세(勢)를 확대하면서 예전 선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여파로 ‘정속 모드’로 진행됐던 선거 분위기가 막바지 과열 양상에 따라 불법과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 간 음해와 비방, 고소·고발이 난무할 뿐 정책과 비전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선거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실망이 ‘선거 엄중’과 ‘투표 포

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며, 지역 내 갈등과 여론 분열의 개연성도 높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게 된다. 또한 유권자가 7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7표제’로서 선거 전에 투표 방법과 후보자 면면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법과 혼탁을 부추기는 후보자는 투표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특정정당 후보만 무조건 찍는 ‘묻지마 투표’ 행태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내 자녀 교육의 미래가 이를 후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후보자들도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후색선전, 금품 등 탈법적인 수단만 발등을 짚게 될 뿐이다. 민주 도시 광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공명선거에 나서 아름다운 감동을 줘야 할 것이다.

소방장비·인력 태부족 화마 감당 어떻게

열악한 소방장비와 인력이 크게 부족해 잇따르는 화재 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충과 함께 소방체계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도 그렇다. 진압 장비가 낡고 구급대원의 부족으로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배연 차량’은 요양병원에서 37km나 떨어진 담양소방서에 배치돼 있어 초기에 투입되지 못했다. 특히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몇 명 되지 않아 제때에 손을 쓰지 못했다. 가장 먼저 출동했던 장성 삼계 119센터 근무자는 단 5명뿐이었다. 따라서 대원들이 ‘골든 타임’에 불을 끄고 인명구출을 동시에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본적인 소방장비 보급도 문제다. 불이 나면 진압에 필수적인 도구인 안전

장갑은 6개월 지나면 찢어져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수년이 지나도 예산이 불어나고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들은 어쩔 수 없이 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소방관들에게 몸을 사리지 말고 불길에 뛰어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전남지역 소방체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담양소방서는 총 166명의 인력으로 담양·장성·곡성 등 3개 군을 맡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내근직(20명)을 제외하면 3교대로 3개 군에 나뉘어 근무함으로써 16명이 1개 군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인력 부족과 먼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밝힌 만큼 안전처 운용 계획에 보다 치밀한 소방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선출직에게 지지율은 힘의 원천이라고 할 만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지율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뜻대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도입된 이래 평균 투표율은 50%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1995년 68.4%를 기록한 것이 역대 최고 투표율이다. 50%대 투표율로 볼때 투표율이 절반가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의 지지만 받은 셈이 된다.

고 벌금 미납시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 의무투표제 역사(1893년 도입)가 가장 긴 벨기에에는 15년간 4번이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하고 10년 동안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브라질에선 최저임금의 3~10%를 벌금으로 부과 뿐만아니라 공직 진출을 제한하고 여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20달러의 벌금과 함께 3년간 공직 진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단위 투

투표율 높이기

민적 관심이 큰 대선도 투표율 높이기

표에 처음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한 투표 결과 유권자 10명 중 1명이상이 투표했다. 전남은 유권자의 18%, 광주는 13%가 사전투표에 참가해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예전과 달리 야당과 무소속의 치열한 대결 양상이 높은 투표율을 낳았다. 후보들마다 6월4일 본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가슴을 졸이는 불眠의 밤이 될 듯 하다. 투표율을 높이고 후보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사전투표제는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기고



양성관 동강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지난 해, 지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증심사 가기 전 우측에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목적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환자를 찾자, 요양병원 직원은 우리에게 1층에서 기다리도록 했고, 나는 그 사이 병원시설을 둘러보았다. 환자가 있다는 2층을 가려고 하더니 계단에 철문이 있고, 철문 사이에 환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2층문이 하나 더 있었으며 그 안에 많은 환자들이 보였다. 외부에서 절대 환자와 개인적 접촉이 안 되도록 막아놓았다. 순간, 이곳은 병원이 아니고 환자들을 가두어 두는 집단 수용소처럼 보였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시설 점검도 철저하게

우리가 찾던 환자는 10여분이 지나자 나타나고, 환자가 처음 하는 말은 “빨리 이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애원을 하였다. 자신은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이곳은 정신질환자 수용소라는 것이다. 환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모든 문을 막아놓았고, 병동 안에서는 환자들끼리 서로 때리고, 싸우거나, 하루 내내 아비규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병원 한쪽 구석에 쫓고있고 앉아 숨어살듯 했다고 한다. 나는 지인에게 곧바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고, 그 환자는 즉시 퇴원수속을 한 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사고를 접한 후, 왜 이 요양병원이 강하게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일까? 그러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그 요양병원에 화재가 난다면 환자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을 것인가?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들어 볼 수 있는 추세 가운데 하나는,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한적한 지역에 많은 요양병원 건물을 볼 수 있다. 예전의

병원건물이 어느 날 요양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거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이 요양병원 건판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요양병원 찾기 힘들었지만, 2002년 말 19개에서 2013년 말에는 1103개소로 10년 사이에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절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고령화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되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치매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러나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무슨 밤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오직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생활하면 되는 것이다. 관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현행법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개설허가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안전이나 소방에 관한 기준은 미흡한 편이다. 요양병원 인건비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인건비도는 설립요건 점검에만 치중되어 있고 화재예방은 필수항목에 빠져 있다. 요양병원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운영 가능하며, 면적 1000평방m에 4층 이상 규모일 때만 방재장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으로 화재와 재난 대비에 대한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외에 당직인력 확충과 안전교육 강화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고양 터미널 화재, 장성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들이 또 다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환자의 힘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힘든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안전에 관한 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가 넘어가려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안이 없어지는 행복한 하루하루는 언젠나 올 것인가?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